



제417회국회(임시회)
제 2 차 국 방 위 원 회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의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4호)

2024.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군수품 국외 대여·양도 절차	7
2. 국회 동의권 관련 헌법 조항 및 유사 입법례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4. 7. 10.
3. 회 부 일 : 2024. 7.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전투장비·탄약 등의 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

-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등에게 전투장비 및 탄약 등의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거나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5조의2(대여·양도에 대한 국회 동의)</u> 국방부장관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에게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

현행	개정안
	는 국가 외의 자 2.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군을 해외파견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

□ 현행법 제14조 및 제15조¹⁾ 등에 따르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외국 정부에 대여·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²⁾

「대한민국 헌법」 제60조³⁾에 따르면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선전포고 및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의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에 대한 무기 등 군수품 지원 시에는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군수품의 대여·양도는 외국 정부와의 국방·외교협력, 방산 수출 증진 및 범정부적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

1)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참고자료] 1. 군수품 국외 대여·양도 절차

3)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⁴⁾ 등을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의 대여 또는 양도 시 국회 동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외국정부 등)에게 전투장비나 탄약 등의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 시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 군수품이 분쟁 발생으로 전쟁 중인 국가에서 사용되어 국제적인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분쟁발생국 여부 및 대여 또는 양도될 군수품에 대해 정부 및 국회가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이중의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로 보임.

4)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은 재래식 무기가 테러, 민간인 학살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간 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으로, 조약에 따라 재래식 무기가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이 금지되고, 무기 수출에 관한 내용을 UN에 보고해야 함. 우리나라를 포함한 62개국이 2013년 6월 UN 총회에서 서명하였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ro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해외 무기 지원 관련 법령 비교]

구분	현행 법체계	개정안	미국 AECA
국회 동의	없음	전쟁중인 국가 등에 전투장비·탄약 등 대여·양도 시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군사장비 및 군용물자품목의 수출 시
전쟁 또는 외교분쟁 관련국가 수출허가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라 정부 조정·통제	국회 동의	의회 동의
허가처리	15일 이내	국회 동의 회신일 제한없음	30일 이내

* 자료 : 국방부

□ 다만, 현행법에서 군수품 대여·양도 권한을 국방관서 및 각군에 부여한 취지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 효율을 위해 재량을 발휘하도록 한 것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정부의 재량이 지나치게 축소될 수 있고, 우리 군수품의 외국정부에 대한 대여·양도 지연으로 외국정부의 관련 지원 및 국제·외교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미국과 달리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전쟁무기 지원 등의 구체적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행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려는 무기 지원 기준을 검토하는 식으로 견제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⁵⁾.
- 한편 우리 군수품의 대여·양도가 국제적 외교·안보 및 국익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제적 분쟁”의 개념과 군수품의 종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수품의 종류에 대해서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으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과 같이 “국제적 분쟁”의 개념과 기준도 이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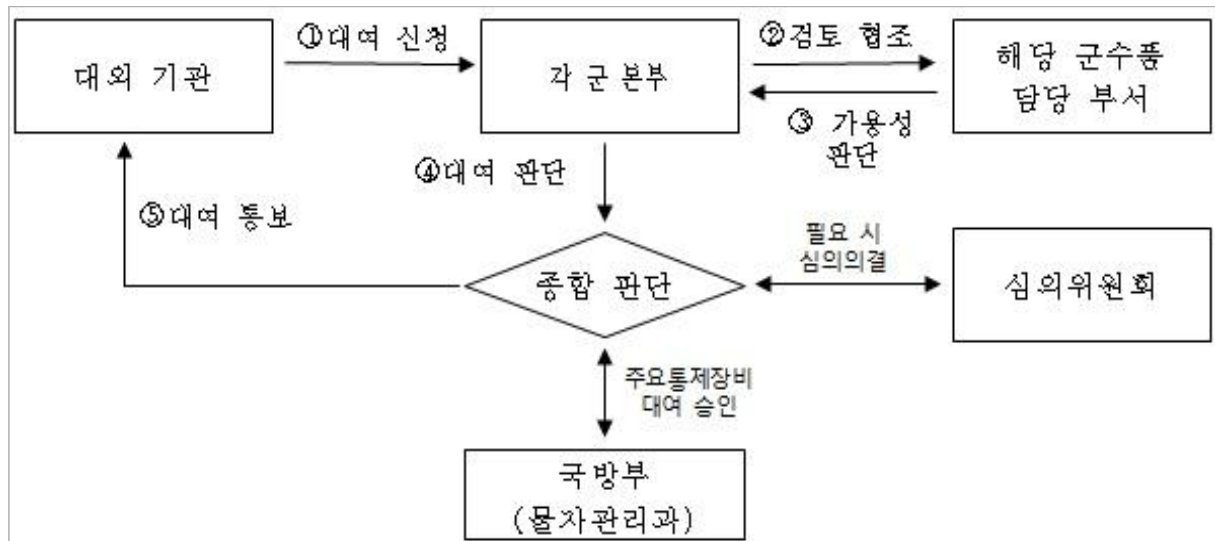
02)6788-5308

5) 국회입법조사처, “「방위사업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과 해외 입법례의 비교”, 입법조사회답

※ 참고자료

1. 군수품 국외 대여·양도 절차

[군수품 국외 대여 절차]



* 자료 : 국방부

[군수품 국외 양도 절차]



* 자료 : 국방부

2. 국회 동의권 관련 헌법 조항 및 유사 입법례

「대한민국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9조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 (남북합의서 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9조의2 (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① 수출입은행이 차입하는 외국자본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①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